

#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코로나19 경증 및 무증상 환자 생활 및 의료지원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인 운영 ○ 의료지원반에 투입된 과건의료·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지급		
사업비 (당해년도)	8,000,000천원	(국비)	(사비)8,00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시민건강국	코로나19대응지원 과	정지애 2133-9300	김연남 2133-9311	이희정 2133-7520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1예산액 (A)	2022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36,466,000) 48,211,493	(x-) 8,000,000	(x△36,466,000) △40,211,493	(x△100) △83
기타보상금	(x11,466,000) 23,211,493	(x-) 8,000,000	(x△11,466,000) △15,211,493	(x△100) △66
민간경상사업보조	(x5,400,000) 5,400,000	(x-) 0	(x△5,400,000) △5,400,000	(x△100) △100
민간위탁금	(x2,100,000) 2,100,000	(x-) 0	(x△2,100,000) △2,100,000	(x△100) △100
자치단체경상보조 금	(x17,500,000) 17,500,000	(x-) 0	(x△17,500,000) △17,500,000	(x△100) △10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	
기타보상금	○ 15개 생활치료센터 1분기 의료인력 인건비 8,000,000,000원	= 8,000,000천원

**3**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, 생활치료센터의 하반기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사업근거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65조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2. 1. ~ 코로나19 종료시
- 사업내용 : 생활치료센터 운영(최대 15개소) 에 따른 의료·지원인력 인건비 지급
  - 협력병원 소속 인건비, 수당, 4대보험 기관부담금
  - 중수본 파견인력 인건비, 수당 등
- 소요예산 : 8,000,000천원(전액 시비)

추진경위

- '20. 03. ~ : 확진자 증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설치·운영중단·재운영
- '20. 12. :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추가 확보
- '21. 01. : 2021년 기금 및 예비비 편성(본예산 미편성)
- '21. 06. : 2021년 하반기부터 일반회계로 편성(2021년 제1회 추경예산)
- '21. 07. : 15개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
  - 확진자 추세 및 병상 가동률에 따라 조정 예정

2022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
계		8,000,000	
코로나19 대응지원	2022.01~2022.12	8,000,000	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인건비 지급

## 4 사업 효과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9년도	
2020년도	○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(최대 15개소) 인건비 지급 - 중수분 파견인력 및 공중보건의(군의원) 포함
2021년도	○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(최대 15개소) 인건비 지급 - 중수분 파견인력 및 공중보건의(군의원) 포함

### □ 향후 기대효과

-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안전한 격리 치료와 확산 방지